

제주지방법원 2021. 5. 31 선고 2020가단663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김혜원, 한상민, 성학녕, 노희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주현

피고B

변론 종결2021. 5. 17.

판결 선고2021. 5. 3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5.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0. 3. 26. 접수 제1578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게 ① 1998. 3. 26. 카드대출 9,284,617원을, ② 2003. 7. 7. 종합통장대출 21,000,000원을, ③ 2014. 8. 13. 일반대출 2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C은 위 ①대출금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위 ③대출금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위 ②대출금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각 연체를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 대하여 2020. 9. 23.을 기준으로 합계 39,006,240원(= 비용과 원금 37,222,765원 + 미수이자 1,783,475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C은 2006. 8.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지분(이하 '이 사건 C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하였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9. 3. 6. 접수 제12129호로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0. 3. 26. 접수 제15787호로 피고에게 2019. 5. 2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C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가등기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C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 (주)E에 대한 15,073,110원의 채무, F(주)에 대한 30,188,967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보건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등 참조),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9. 5. 27.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60,000원을 공제한 47,840,000원을 송금하여 준 C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인 점, ②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줄 당시 C은 134,268,31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시가 37,945,110원1) 상당의 이 사건 C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③ 이와 같이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C 지분을 채권자 중의 1인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가 C에게 위 ①항의 금원을 대여한 2019. 5. 27.자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2020. 3. 26.자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9. 5. 27.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C 지분의 매매대금 50,000,000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47,840,000원을 C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가 2020. 3. 26.자로 이루어진 점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질 무렵에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C 지분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은 창원지방법원 2020개회6694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위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한 위 법원 2020개확100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에서 2021. 1. 14. 위 법원은 "피고의 C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50,000,00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고지하여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면 위 결정의 기판력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²⁾,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채권자의 권리일 뿐이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석문

별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공시지가는 221,423,400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시가표준액 6,247,26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C 지분의 가치는 37,945,100원[= 227,670,660원(= 221,423,400원 + 6,247,260원) ÷ 6] 상당이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참조).